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15.)

# 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 목 차

|   |                                 |     |
|---|---------------------------------|-----|
| 1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   |
| 2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2  |
| 3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 60  |
| 4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 71  |
| 5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79  |
| 6 |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 91  |
| 7 |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        | 99  |
| 8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        | 106 |

#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개정이유

-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18. 5. 1.시행)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전환되었는데, 현행 조례는 여전히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명)

- 제명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 「거창군 소비자 기본 조례」
- 위임근거 인용법명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나.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 생활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정함.(안 제6조~제13조)
- 마.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 6. 11. ~ 7. 3.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윤택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15호, 2017.10.31., 일부개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

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7호, 2018.4.30., 일부개정]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에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 법령 중복·재기재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16.3.15.의견 16-0054 '12.6.29.의견 12-0179 참조).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법제처 의견18-0103 '18.5.25.)

~생략~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의 책무를 진다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제1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

우 제정되는 조례는 이른바 “**임의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여부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조례에 규정할 사항의 범위에 대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창군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제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지 아니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도 거창군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현행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반입·판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군수의 의무)**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 대책의 강구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의 방지 대책의 강구
5. 소비 생활 관련 주요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해의 방지, 적절한 계량 및 규격의 사용 표시기준의 준수와 공정한 거래의 확립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

### 제1절 위해의 방지

**제7조(위해 물품 등의 제공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제조·수입·판매 등의 중지와 당해 용역의 제공 금지를 권고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규격·표시 등의 적정화)** 사업자는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적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성분·구조·형태·치수 및 중량 등에 대한 적절한 규격에 따를 것
2. 품질·기능·제조연월일·보존기간·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가격·단위 등을 적정하게 표시할 것
3. 적정하게 계량하고 중량을 명시하도록 할 것
4. 내용물의 보전 또는 품질 보전의 한도를 넘은 포장, 내용물의 가격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간 포장 등 과대 포장을 하지 아니할 것
5. 보증 기간, 수리의 내용 등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적정하게 명시할 것

**제9조(자동판매기의 관리)** 사업자는 상품 등을 자동판매기(이하“자판기”라 한다)에 의해 공급할 때에는 해당 자판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 설치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의 주소·성명·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절 준수 기준 설정

**제10조(사업자 자율기준의 설정)** ① 사업자가 조직하는 단체(이하“사업자단체”)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이하“자율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율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군 기준의 설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율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자율기준의 내용이 그 설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율기준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관계사업자의 상당 부분을 점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서 설치 규정한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표를 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거래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게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한 판단이나 부주의·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중지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절 가격동향 등의 조사 및 정보제공

**제13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의 생산·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정보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자에게 정보제공·교육실시 등)** ① 군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절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15조(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 및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 서신·방문·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환·환불·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동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피해 구제기준)** 소비자 피해의 구제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다.

**제17조(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법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을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공표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 제5절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20조(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의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1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소비자의 교육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5.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 할수 있다. 다만, 공표 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써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국·공립검사 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의 결과를 공표 할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소비자단체는 법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이름(상호 기타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그 사유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 할 수 있다.

⑤ 소비자 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⑥ 소비자 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3장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2조(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의원과 소비자단

체·유관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계,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 개정 2016.7.20.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제2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상공담당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질병·장기불출석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상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6조제4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간사는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청취 및 출석요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 한다)을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참석한 위원·실무위원 및 출석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31조(보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개정이유

-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적 정책방향 지향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3조)
  -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개략적인 사항도 정하지 않고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 나. 법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함.(안 제36조·제44조·제46조·제47조, 현행 제43조·제45조 삭제)

-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명칭 간소화 (안 제48조 · 제49조)

#### 다. 생산녹지지역 행위 제한 완화함.(안 별표 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허용

#### 라. 보전관리지역 행위 제한 완화함.(안 별표 1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허용

#### 마.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허용함.(안 별표 18)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하여 주민에게 혜택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 바. 계획위원회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사항 등 반영.(안 63조의 2)

#### 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함.(안 표 23)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200kW미만 신설(도로와 이격거리 100m,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 200m미만)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72조, 제85조, 별표 1의3, 별표 4, 별표 9, 별표 10, 별표 15~19, 별표 22, 별표 23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14. ~ 9. 13.

(나) 예고결과 : 결과요약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토지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과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현행 기준을 2017. 5. 10. 공포하여 시행중임. 금번 개정사항은 발전용량 200kW미만에 대하여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100m이내 및 주거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미관훼손 염려로 인한 주민민원 예상 및 햇빛 반사 등에 따른 도로 차량 운전자의 시거 장애로 인한 교통 위험성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함.



## 6. 참고자료

[별표 23]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1. 다음 각 목의 기준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 발전용량(킬로와트) |                          | 나. 도로에서 직선거리(미터) |            | 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미터) |            |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b>200미만</b>             |                  | <b>100</b> |                               | <b>200</b> |
| 299.9 이하      | <u>200이상<br/>300미만</u>   | 200              | 200        | 300                           | 300        |
| 300~599.9     | <u>300이상<br/>600미만</u>   | 200              | 200        | 400                           | 400        |
| 600~999.9     | <u>600이상<br/>1,000미만</u> | 200              | 200        | 500                           | 500        |
| 1,000 이상      | <u>1,000이상</u>           | 200              | 200        | 600                           | 600        |

비고

- 1) 발전용량은 연접한 부지 30미터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 발전허가를 받고 시행계획이거나, 개발행위준공 1년 이내 또는 시행중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으로 한다.
- 2)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 3)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4)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를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웬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울타리와 태양광 발전시설 사이에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울타리 높이는 1미터 이상, 이격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발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생략~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일부개정]

#### ◇ 개정이유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생략)

나.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제31조제1항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미관지구·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는 등 세부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

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가능 지역 및 지정기준 규정(제31조제6항, 제31조제7항 신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정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9조, 제94조 및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           |
|-------------|-----------|
| 종전의 미관지구    | 경관지구      |
|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 2. 일반미관지구   |           |
| 3. 역사문화미관지구 | 2. 특화경관지구 |

제4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 지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 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 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보존 지구     | 보호 지구       |
|---------------|-------------|
| 역사문화환경보존 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 지구 |
| 2. 중요시설물보존 지구 | 중요시설물보호 지구  |
| 3. 생태계보존 지구   | 3. 생태계보호 지구 |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시설보호 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 지구 및 특정용도제한 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시설보호 지구  | 중요시설물보호 지구 및 특정용도제한 지구 |
|--------------|------------------------|
| 공용시설보호 지구    | 1. 중요시설물보호 지구          |
| 2. 항만시설보호 지구 |                        |
| 3. 공항시설보호 지구 |                        |
| 4. 학교시설보호 지구 | 2. 특정용도제한 지구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17. 12. 29.>

###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



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 4. 10.>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17. 12. 29.>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2017. 12. 2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무기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

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삭제 <2005. 1. 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1. 분야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 가 기 준                                                                                                                                                                                                                                                                                                                    |
|---------|----------------------------------------------------------------------------------------------------------------------------------------------------------------------------------------------------------------------------------------------------------------------------------------------------------------------------|
| 가. 공통분야 |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br>(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br>(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br>(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br>(나) 삭제 <2016. 6. 30.> |

|              |                                                                                                                                                                                                                                                                                                                                                                                                                                                                                       |
|--------------|---------------------------------------------------------------------------------------------------------------------------------------------------------------------------------------------------------------------------------------------------------------------------------------------------------------------------------------------------------------------------------------------------------------------------------------------------------------------------------------|
|              | <p>(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나. 도시·군관리계획  | <p>(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
| 다. 도시·군계획사업  | <p>(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p> <p>(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
|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p>(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p>                                                       |
| 마. 기반시설      | <p>(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p> <p>(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p>                                                                                                                                                                                                                                                                                                               |
| 바. 그 밖의 사항   | <p>(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p> <p>(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p>                                                                                                                                                                                                                                                                                                                                                                                        |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 가 기 준                                                                                                                                                                                                                                                                                                                                                                                                                                                                                                                                                                     |
|-----------------------|-----------------------------------------------------------------------------------------------------------------------------------------------------------------------------------------------------------------------------------------------------------------------------------------------------------------------------------------------------------------------------------------------------------------------------------------------------------------------------------------------------------------------------------------------------------------------------|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p>(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p> <p>(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나. 토지의 형질변경           | <p>(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숯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p> <p>(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p>                                                                                                                                                                                                                                                                                                                                                                    |
| 다. 토석채취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토지분할               | <p>(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p> <p>(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p> <p>(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1)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p> <p>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p>                                                                                                            |

|                 |                                                                                                                                                                                                                                                                                                                                                                                                                                                                                                                                                                                                                                                                                                                                                                                                                                                                                                                                                                                                                                                               |
|-----------------|---------------------------------------------------------------------------------------------------------------------------------------------------------------------------------------------------------------------------------------------------------------------------------------------------------------------------------------------------------------------------------------------------------------------------------------------------------------------------------------------------------------------------------------------------------------------------------------------------------------------------------------------------------------------------------------------------------------------------------------------------------------------------------------------------------------------------------------------------------------------------------------------------------------------------------------------------------------------------------------------------------------------------------------------------------------|
|                 | <p>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p> <p>(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p> <p>(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의 분할</p> <p>(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p> <p>(라) &lt;삭제&gt;</p> <p>(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li> <li>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li> <li>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li> </ol>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
| 마.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검토 분야     | 허가 기준                                                                                                                                                                                        |
|-----------|----------------------------------------------------------------------------------------------------------------------------------------------------------------------------------------------|
| 가. 시가화 용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li> <li>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li> </ol> |

|          |                                                                                                                                                                                                      |
|----------|------------------------------------------------------------------------------------------------------------------------------------------------------------------------------------------------------|
|          | 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나. 유보 용도 |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br>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다. 보전 용도 |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br>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별표 4] <개정 2018. 1. 16.>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9] <개정 2016. 11. 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16. 11.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개정 2017. 2. 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개정 2018. 1.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개정 2017. 2.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17. 2. 3.>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개정 2018. 1. 1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2] <개정 2016. 6. 30.>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16. 11. 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융합산업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5389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7. 3. 21.>

- 1.~2. (생략)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12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용도지구 개편내용(2018.4.19 시행)

| 현 행    |            | 개 정      |               |
|--------|------------|----------|---------------|
| 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        | 역사문화미관지구   |          | 특화경관지구        |
|        | 일반미관지구     |          | 시가지경관지구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고도지구     | 고도지구          |
|        | 최저고도지구     |          | 폐지            |
|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 생태계보존지구    |          | 생태계보호지구       |
| 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
|        | 공용시설보호지구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
|        |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 -      | -          | 복합용도지구   | 신설            |

## □ 「거창군 계획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거창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장 군관리계획

####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6조(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와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

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2016.7.01.>

##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조 (삭제 2012.1.11. 조례 제 2066호)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4.10.0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삭제 2014.10.01)

제18조(삭제 2014.10.01)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폭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 경계부터 별표 24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 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웬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언덕, 구릉지, 수목과 주민 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 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2016.7.01.>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4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사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삭제 2014.10.01)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4조 (삭제 2014.10.01)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호 삭제 2014.10.01)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호 삭제 2014.10.01)

4.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동호의 가목, 나목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블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4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2014.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상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7(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가.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014.10.01)

나.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1조의4(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제6장 군계획위원회

###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2조(기능)** 거창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재해·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 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이행상 취득한 군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72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제안이유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3. 위탁개요

- 가. 사 업 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나. 사 업 량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3대
- 다. 대상사무
  -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3대)
  - 교통약자콜택시 유지관리 및 운송사업 전반
-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2015.7.1. ~ 2018.12.3.(당초 2015.7.1. ~ 2018.6.30.)

## ○ 위탁차량

| 차 종  | 차 명        | 차량번호    | 연 식  | 비 고                   |
|------|------------|---------|------|-----------------------|
| 중형승합 | 창립하이램프장애인차 | 74우8737 | 2012 | * 휠체어 슬로프<br>(경사판) 장착 |
| 중형승합 | 창립하이램프장애인차 | 74우8738 | 2012 |                       |
| 중형승합 | 창립하이램프장애인차 | 74우8739 | 2012 |                       |

##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5년도 : 3,895명(1일 평균 운행횟수 10.6)
- 2016년도 : 3,218명(1일 평균 운행횟수 8.8)
- 2017년도 : 3,209명(1일 평균 운행횟수 8.7)
- 2018년도 상반기 : 1,526명(1일 평균 운행횟수 8.4)

## 마. 운영계획

### ○ 모집방법 : 공개모집(1개 업체)

###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

### ○ 위탁기간 : 위탁업체와 계약일로부터 3년간

### ○ 운행시간 : 평일(7~21시), 토요일(8시~18시), 일요일 (8시~13시)(연중무휴)

###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 편도 운행

## 4. 참고사항

### ○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가능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 ○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 제21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에게 복지 증진 및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60일 전)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관리·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교통약자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1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제1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2015.12.30.)

####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창군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신청, 예약 신청 및 장기 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이용대상 관련 법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④ 삭제 <2012. 11. 30.>

##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 제정 ) 2011.08.08 조례 제2049호

( 일부개정 ) 2015.12.30 조례 제230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조례 제232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2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요금(시외버스는 해당구간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계획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행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계획임

## □ 위탁운영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운영위탁)

## □ 위탁 개요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체 : 1개 업체 선정 / 위탁차량 : 3대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계약부터 3년간)
- 운행시간(연중무휴)
  - 평일 : 7~21시, 토요일 : 8시~18시, 일요일 : 8시~13시
  - ※ 추후 차량 추가 구입 및 수요 증가 등 필요에 따라 확대 운행 가능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

## □ 그간의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2015.7.1 ~ 2018.12.31 / 당초 2015.7.1 ~ 2018.6.30
- 기간연장 사유
- 군의회 미 개원(3월~6월)으로 인한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처리 불가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자체사무를 위탁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
- 교통약자콜택시와 휠체어택시 통합안 검토 지연
  - 두 사업의 계약만료(2018. 6. 30)를 앞두고 통합안에 대한 부서의 지속

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에 따른 통합여부 최종결정 지연  
 ⇒ 기존방식대로 각각 운영 결정(2018. 5월초) : 복지정책과

## □ 운영방법

| 구분       | 방 법               | 세부내용                                                                                                                                                                                             | 비 고 |
|----------|-------------------|--------------------------------------------------------------------------------------------------------------------------------------------------------------------------------------------------|-----|
| 운영<br>방법 | 위탁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li> <li>· 위탁방법 : 공개모집</li> </ul>                                             |     |
| 운영<br>대수 | 3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li> </ul>                                                                                                     |     |
| 운영<br>시기 | 계약일로<br>부터 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1. 1 ~ 2021. 12. 31</li> </ul>                                                                                                                    |     |
| 운행<br>시간 | 연중무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무휴</li> <li>· 평일 : 7시~21시</li> <li>· 토요일 : 8시~18시, 일요일 : 8시~13시</li> <li>※ 운영대수 또는 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     |
| 운행<br>구역 | 경상남도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대구)까지 운행</li> </ul>                                                                  |     |
| 이용<br>대상 | 교통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급 또는 2급 장애인</li> <li>② 65세 이상의 노약자</li> <li>③ 임산부</li> <li>④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li> <li>⑤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li> <li>※ 단, ①~④항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li> </ul> |     |
| 이용<br>요금 | 위원회<br>심의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결정</li> <li>· 관내 : 2,000원(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의 2배)</li> <li>· 관외 :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적용</li> <li>· 유료도로 통행료 : 지자체 지원</li> </ul>                     |     |
| 이용<br>방법 | 즉시콜<br>사전예약<br>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 경남도 콜센터(1566-4488)</li> <li>· 예약시기 : 이용 전일 21시~24시까지(3시간 동안)</li> </ul>                                                                            |     |

## □ 위탁업체 지원 및 선정방법

###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차량 및 운영비

| 차 종  | 차 명            | 차량번호    | 연 식  | 비 고                   |
|------|----------------|---------|------|-----------------------|
| 중형승합 | 창립하이램프<br>장애인차 | 74우8737 | 2012 | * 휠체어 슬로프<br>(경사판) 장착 |
| 중형승합 | 창립하이램프<br>장애인차 | 74우8738 | 2012 |                       |
| 중형승합 | 창립하이램프<br>장애인차 | 74우8739 | 2012 |                       |

- 운 영 비 : 130,000천원

▶ 차량 1대당 43,000천원(운전원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등)

※ 단,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사무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운송사업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향후계획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18. 10월초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개최 : 2018. 10월말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18. 11월초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8. 11월말
- 위탁 운영 : 2019. 1. 1. ~ 2021. 12. 31.

## □ 기대효과

-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제안이유

- 신원면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행정기능이 소멸하여 매립장 미 매립지(현장사무실 등) 일부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행정재산의 가치를 최대화 하고 인근 감악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3. 추진내용

###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 사 업 자 : 감악마을회관(대표 유종수)
- 사업기간 : 2019. 2. ~ 2019. 6.(5개월간)
- 발전용량 : 100kW
- 사 업 비 : 200백만원(낙동강 수계기금)
- 발전금액 : 24,000천원/년

## 나. 그간 추진사항

- 2017.12.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낙동강수계기금)
- 2018. 2. : 매립장 부지 지목변경 및 분할
- 2018. 2. :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 승인

## 다. 공작물설치 대상 재산의 표시(토지소유자 거창군)

| 위 치                  | 면적(m <sup>2</sup> ) | 태 양 광<br>설치면적 | 용 량   | 사용허가신청자           |
|----------------------|---------------------|---------------|-------|-------------------|
| 합 계                  | 4,499               | 1,500         | 100kW |                   |
| 신원면 구사리<br>1625-18번지 | 4,499               | 1,500         | 100kW | 감악마을협의회<br>대표 유중수 |

## 라.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 나. 연간 수익 및 용도

- 연간 예상발전 수익: 24,000천원 정도  
※ 산출근거: 설치용량×일평균발전시간×365일×가중치×인증서 가격(SMP 가격)
- 수익금 사용
  - 감악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 지내에 설치된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행정기능이 소멸되어 건설폐기물 매립장  
미 매립지 일부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행정재산의  
가치를 최대화 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  
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군 의회가 심의할 내용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관련법규로 거창군에서 제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 동의에  
필요한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조례 정비 후 의회 동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로 특정단체  
(감악마을회법인)를 선정해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 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5.12.10.)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3. 위탁개요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33,819㎡(거창군)
  - 연면적 ㄱ 당초 : 8,219㎡(선별 3,499㎡, 저장 1,780㎡(1,440톤) / 기타 2,940㎡)
    - ㄴ 보완 : 2,874㎡(선별 1,171㎡, 저장 1,467㎡, 기타 236㎡)
  - 시설내역 : 선별기(1일 50톤/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 나. 위탁사무

- 시설 :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 다. 운영계획

- 위탁업체선정 : 공모방식
  -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5년)
- 위탁운영 방법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통합운영
  -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

## 라. 소요예산 : 없음

## 마. 그간 추진사항

- 2005. 5. 19. : 서북부경남 거점APC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007. 5. 30.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설립
- 2008. 9. 9. ~ 2009. 10. 25. : 서북부경남 거점APC 건립
- 2009.11.17.~2014.12.31. : (주)NH유통 1차 위탁 운영
- 2012. 7. 27. : 서북부경남 거점APC 시설보완사업 준공
- 2015.1. 1. ~2018.12.31. : (주)NH유통 2차 위탁 운영

## 마. 향후계획

- 2018. 10. : 운영주체 위탁 군의회 동의
- 2018. 10. : 운영주체 공모 모집 및 선정
- 2018. 12. :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 1. 1. ~ 2023. 12. 31. : 위탁운영 실시

## 4. 참고사항

### ○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효율적인 물류·유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운영체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지유통의 활성화 기여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공모로 업체 선정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북부 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조례 제15조에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60일 전)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17. 9. 15.)된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과,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간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계획

- (주)NH유통에서 지난 4년간('15~'18년) 위탁 운영한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위탁 기간이 만료('18. 12. 31)됨에 따라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하고자 함.

## I.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명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 및 제15조 제1항

## II. 시설개요

### □ 거점APC 건립 연혁

- 2005. 5. 19. : 서북부경남 거점APC 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2007. 5. 30.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설립
- 2009. 4. 1. : 거창사과원에농협이 주관농협 선정/ 지분율51%
- 2009. 9. 25. : 서북부경남 거점APC 준공/ 개장 11. 10.
- 2012. 7. 27. : 서북부경남 거점APC 시설보완공사 준공
- 2009.11.17.~2014.12.31. : (주)NH유통 1차 위탁 운영
- 2015.1. 1. ~2018.12.31. : (주)NH유통 2차 위탁 운영

### □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거함대로 3372 / 거창·함양·함천군
- 대지면적 : 33,819m<sup>2</sup> (토지소유자 : 거창군)
- 사 업 비 □ 당초 : 19,303백만원(기금 7,750, 도비 3,100, 거창 7,012, 함양 1,240, 함천 201)  
↳ 보완 : 3,279백만원(국 10, 기금 1,560, 도 624, 군 1,085)
- 연 면 적 □ 당초 : 8,219m<sup>2</sup>(선별 3,499m<sup>2</sup>, 저장 1,780m<sup>2</sup>(1,440톤) / 기타 2,940m<sup>2</sup>)  
↳ 보완 : 2,874m<sup>2</sup>(저장 1,467m<sup>2</sup>, 선별 1,171m<sup>2</sup>, 기타 236m<sup>2</sup>)
- 시설내역 : 선별기 (1일 50톤 / 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 □ 운영현황

### ○ 위탁기간

- 1차 2009. 11. 17. ~ 2014. 12. 31.(5년, 1개월간)
- 2차 2015. 1. 1. ~ 2018. 12. 31.(4년간)

### ○ 운영주체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대표이사 김학두

- 주관농협 :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 조합장 윤수현
- 참여농협 : 14개소 / 거창7, 함양2, 합천5

### ○ 자본금 : 2,000백만원 / 거창원협 51% - 주관농협

## III. 위탁추진 계획

### □ 위탁선정

####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7.9.15.)

##### -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

####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간)

####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15명 (위원장1, 부위원장 1, 위원 13)

- 위원장 : 거창군 부군수
- 위 원 : 13명 이내

(공무원6, 군의원1, 생산농가2, 함양·합천군3, 전문가1)

### □ 위탁범위

- 시설 : 산지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 IV. 양우계약

- 운영주체 위탁 군의회 동의 : 2018년 10월
- 운영주체 공모 모집 및 선정 : 2018년 11월
-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018년 12월
- 위탁 운영 실시 : 2019. 1. 1. ~ 2023. 12. 31.

## V. 소요예산 : 해당없음

## VI. 기대효과

- 유통센터의 물류유통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개모집으로 통한 투명성 있는 운영자를 모집 거창군의 유통의 체계구축으로 산지유통의 활성화 기대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8577호, 2018. 1. 9, 일부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정 )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농산물의 세척·절단·살균·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방법)**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의 유지, 개·보수,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함.

###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 업 비 : 2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br>예산액 | 2019년<br>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기 타 |
| 2019년 | 100          | 200           | 200   | -   | -   | 200 | -   |

- 사업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안정사업 컨설팅 등 업무 지원

## 4. 부서의견

-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5.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사본 각 1부 : 붙임
- 경남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 붙임

## 6. 검토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20.6%, 경남도 33.5%, 시·군 2.8%, 금융기관 37.7%, 기업체 등이 5.4%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5년, 2017년, 2018년 각 1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7. 참고자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자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                               |                                                                                                                                                                                                                                                                                                                                                                                                                   |                       |                            |                    |                                               |                       |                     |
|-------------------------------|-------------------------------------------------------------------------------------------------------------------------------------------------------------------------------------------------------------------------------------------------------------------------------------------------------------------------------------------------------------------------------------------------------------------|-----------------------|----------------------------|--------------------|-----------------------------------------------|-----------------------|---------------------|
| 설립근거                          |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                            |                    | 전화번호 : 1644-2900<br>홈페이지<br>www.gnsinbo.or.kr |                       |                     |
| 주요연혁                          | ○ 1996. 6월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br>○ 2000. 3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 변경<br>(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시행)<br>○ 2004. 4 ~ 2011. 4 : 진주, 양산, 마산, 거제, 김해,<br>사천지점 개점<br>○ 2011. 5월 중소기업 지원유공단체<br>국무총리 표창 수상<br>○ 2011. 7. ~ 2016. 5. 통영, 거창, 창녕지점 개점<br>○ 2017. 6월 고객지원센터 개소<br>○ 2017. 12월 누적 신용보증 공급금액 6조원<br>○ 2017. 12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경영우수기관)<br>○ 2018. 1월 기업지원부 신설<br>(교육·컨설팅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탁관리)<br>○ 2018. 4월 진해지점 개점<br>○ 2018. 5월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                       |                            |                    | 기관형태<br>(출자,<br>출연)                           | 출연                    |                     |
| 인원현황<br>(‘18.<br>9.현원기준)      | 계                                                                                                                                                                                                                                                                                                                                                                                                                 |                       | 정규직                        | 비정규직               |                                               |                       |                     |
|                               | 93명                                                                                                                                                                                                                                                                                                                                                                                                               |                       | 88명                        | 5명                 |                                               |                       |                     |
| 임 원<br>(‘18. 9.기준)            | 직 책<br>(직책명)                                                                                                                                                                                                                                                                                                                                                                                                      | 성 명<br>(익명처리)         | 주요경력<br>(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 임 기<br>(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                       |                     |
|                               | 이사장                                                                                                                                                                                                                                                                                                                                                                                                               | 공석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비상임이사                                                                                                                                                                                                                                                                                                                                                                                                             | 권○○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 2년                                            |                       |                     |
|                               |                                                                                                                                                                                                                                                                                                                                                                                                                   | 김○○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                    | "                                             |                       |                     |
|                               |                                                                                                                                                                                                                                                                                                                                                                                                                   | 김○○                   | 경남은행 경영관리그룹장               |                    | "                                             |                       |                     |
|                               |                                                                                                                                                                                                                                                                                                                                                                                                                   | 최○○                   |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                    | "                                             |                       |                     |
|                               |                                                                                                                                                                                                                                                                                                                                                                                                                   | 최○○                   | 현대로템(주) 생산본부장              |                    | "                                             |                       |                     |
|                               |                                                                                                                                                                                                                                                                                                                                                                                                                   | 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 "                                             |                       |                     |
| 감 사                           | 장○○                                                                                                                                                                                                                                                                                                                                                                                                               | 장직수회계사무소 대표           |                            | "                  |                                               |                       |                     |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운용, 경영지도, 道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탁관리, 금융복지상담                                                                                                                                                                                                                                                                                                                                                            |                       |                            |                    |                                               |                       |                     |
| 자본금 <sup>1)</sup><br>(단위:백만원) |                                                                                                                                                                                                                                                                                                                                                                                                                   | 198,914<br>(직전연도말 기준) |                            | 출자·출연액<br>(단위:백만원) | 204,459                                       |                       |                     |
| 최근3년간<br>예산 현황<br>(단위:백만원)    | 연도                                                                                                                                                                                                                                                                                                                                                                                                                | 2016                  | 2017                       | 2018               | 재무현황<br>(백만원)<br>‘17.12.31기준                  | 자산                    | 230,747<br>(자산 총액)  |
|                               | 예산액 <sup>2)</sup>                                                                                                                                                                                                                                                                                                                                                                                                 | 8,768                 | 9,500                      | 10,540             |                                               | 부채                    | 31,883<br>(부채 총액)   |
|                               | 지자체<br>지원액 <sup>3)</sup>                                                                                                                                                                                                                                                                                                                                                                                          |                       |                            |                    |                                               | 자본 <sup>1)</sup><br>」 | 198,914<br>(자본금 총액) |
| 경영성과<br>(단위:백만원)              | 총수익                                                                                                                                                                                                                                                                                                                                                                                                               |                       |                            |                    | 총비용                                           |                       | 당기순이익               |
| ‘17. 12. 31.기준                | 16,969                                                                                                                                                                                                                                                                                                                                                                                                            |                       |                            |                    | 24,119                                        |                       | -7,150              |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웃는 경남경제



##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 군정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불임과 같이 거창군의 출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임 :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임성민 부장  이사장 직무 2018. 8. 16.  
대행 김인수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 2018-1409 (2018. 8. 16.) 접수 경제교통과-81796 (2018. 8. 17.)

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 [www.gnsinbo.or.kr](http://www.gnsinbo.or.kr)

전화번호 055-715-5125 팩스번호 055-717-0034 / [tamer81@gnsinbo.or.kr](mailto:tamer81@gnsinbo.or.kr) / 대국민 공개

문서관리카드 경제교통과-81796 1/1



##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요청

1.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귀 시군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을 위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및 조례에 따라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 중입니다.
3.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와 각종 특례보증 집중 지원에 따른 손실 증가\*로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손실금 추세 : ('16) △26.5억원 → ('17)△209.7억원 → ('18년추정) △300억원
4. 이에, 우리 도에서도 '19년 재단 출연금(매년 10억원) 확대를 위해 예산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조선업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서는 시군의 출연이 필수적입니다.
5. 다시 한 번 귀 시군의 적극적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요청 드리며 2019년 예산 반영 시 참고자료를 붙임 송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정(참고용) 1부. 끝.

### 경 상 남 도

수신자 창원시장(경제기업사랑과장), 진주시장(일자리창출과장),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사천시장(지역경제과장), 김해시장(일자리정책과장), 밀양시장(기업경제과장), 거제시장(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양산시장(일자리경제과장), 의령군수(경제교통과장), 함안군수(경제교통과장), 창녕군수(경제도시과장), 고성군수(경제교통과장), 남해군수(경제과장), 하동군수(경제전략과장),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함양군수(일자리경제과장),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합천군수(경제교통과장)

주무관 손필균 소상공인지원 담당 진필녀 경제정책과장 2018. 8. 22. 김희용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282 (2018. 8. 22.) 접수 경제교통과-84156 (2018. 8. 22.)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300(사림동), (사림동, 경 / http://www.gyeongnam.go.kr 상남도청)

전화번호 055-211-3433 팩스번호 055-211-2819 / pandora13@korea.kr / 대국민 공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또는 무료로 영화(공연) 감상의 기회를 !

문서관리카드 경제교통과-84156 2/2

## 시·군별 출연 필요 금액 산정

(기간: 1996.6~2018.6.)

(단위: 억원)

| 구 분 | 총보증공급  |       | 보증잔액   |       | 총대위변제발생 |       | 평 균<br>점유율 | 2019년<br>출연요청<br>금 액* |
|-----|--------|-------|--------|-------|---------|-------|------------|-----------------------|
|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                       |
| 합 계 | 65,513 | 100%  | 12,758 | 100%  | 2,425   | 100%  | 100.0%     | 42                    |
| 창원시 | 26,573 | 40.6% | 4,375  | 34.3% | 891     | 36.7% | 37.2%      | 8                     |
| 김해시 | 10,539 | 16.1% | 2,123  | 16.6% | 485     | 20.0% | 17.6%      | 5                     |
| 진주시 | 8,119  | 12.4% | 1,569  | 12.3% | 230     | 9.5%  | 11.4%      | 4                     |
| 양산시 | 5,525  | 8.4%  | 1,035  | 8.1%  | 197     | 8.1%  | 8.2%       | 3                     |
| 거제시 | 3,939  | 6.0%  | 1,055  | 8.3%  | 124     | 5.1%  | 6.5%       | 3                     |
| 통영시 | 2,358  | 3.6%  | 639    | 5.0%  | 99      | 4.1%  | 4.2%       | 3                     |
| 사천시 | 1,606  | 2.5%  | 394    | 3.1%  | 73      | 3.0%  | 2.8%       | 2                     |
| 밀양시 | 1,076  | 1.6%  | 206    | 1.6%  | 46      | 1.9%  | 1.7%       | 2                     |
| 함안군 | 1,356  | 2.1%  | 280    | 2.2%  | 80      | 3.3%  | 2.5%       | 2                     |
| 거창군 | 933    | 1.4%  | 253    | 2.0%  | 26      | 1.1%  | 1.5%       | 2                     |
| 창녕군 | 595    | 0.9%  | 144    | 1.1%  | 29      | 1.2%  | 1.1%       | 1                     |
| 고성군 | 545    | 0.8%  | 146    | 1.1%  | 33      | 1.4%  | 1.1%       | 1                     |
| 남해군 | 488    | 0.7%  | 112    | 0.9%  | 14      | 0.6%  | 0.7%       | 1                     |
| 산청군 | 372    | 0.6%  | 100    | 0.8%  | 15      | 0.6%  | 0.7%       | 1                     |
| 함양군 | 347    | 0.5%  | 101    | 0.8%  | 11      | 0.5%  | 0.6%       | 1                     |
| 하동군 | 380    | 0.6%  | 76     | 0.6%  | 18      | 0.7%  | 0.6%       | 1                     |
| 합천군 | 300    | 0.5%  | 76     | 0.6%  | 12      | 0.5%  | 0.5%       | 1                     |
| 의령군 | 268    | 0.4%  | 56     | 0.4%  | 19      | 0.8%  | 0.5%       | 1                     |
| 기타  | 194    | 0.3%  | 18     | 0.1%  | 23      | 0.9%  | 0.5%       |                       |

\* 평균점유율 구간에 따른 출연필요 금액 산출

- 0% ~ 1.5%미만 : 1억원 , 1.5% ~ 3%미만 : 2억원, 3% ~ 10% 미만 : 3억원, 10%이상 ~ 15%미만 : 4억원 , 15%이상 ~ 20%미만 : 5억원, 20%이상 ~ 30%미만 : 6억원 , 30%이상 ~ 35%미만 : 7억원, 35%이상 : 8억원



## 시·군별 출연 현황

○ 출연금 총액 : 2,039억원

(2017.8.31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 합계    | 출 연 금 |       |             |       |       | 기타   |
|-----|-------|-------|-------|-------------|-------|-------|------|
|     |       | 정부    | 경남도   | 시·군         | 금융기관  | 기업체 등 |      |
| 금 액 | 2,039 | 419.8 | 682.9 | <b>56.5</b> | 769.1 | 94.7  | 16   |
| 구성비 | 100%  | 20.6% | 33.5% | <b>2.8%</b> | 37.7% | 4.6%  | 0.8% |

# 〔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br>예산액 | 2019년<br>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기 타 |
| 2019년 | 180          | 80            | 80    | 40  | 4   | 36  | -   |

○ 사업내용

- 석재자원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표면가공 기술개발

(표면가공복합기법,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등

## 4. 부서의견

- 우리 군 실물경제의 중추인 석재산업계의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석재자원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 국내 석재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 5.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불임
- 관계 법령 : 불임

##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등의 추진과 거창 화강석의 우수성 홍보 활동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금번 사업은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적 석재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각종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경남의 지역 특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15년 178백만원 2016년 309백만원, 2018년 180백만원 지원함),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 완성 및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출자·출연 기관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                                    |                                                                      |                   |                            |                    |                              |                  |                 |
|------------------------------------|----------------------------------------------------------------------|-------------------|----------------------------|--------------------|------------------------------|------------------|-----------------|
| 설립근거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br>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                   |                            |                    | 전화번호: 055-943-3921           |                  |                 |
|                                    |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br>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                            |                    | 홈페이지 : granite.re.kr         |                  |                 |
| 주요연혁                               | 법인설립허가 : '07. 1. 31                                                  |                   |                            | 기관형태<br>(출자, 출연)   | 출연기관                         |                  |                 |
| 인원현황<br>(‘18. 9.<br>현원기준)          | 계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
|                                    | 5명                                                                   |                   | 0명                         |                    | 5명                           |                  |                 |
| 임원<br>(‘18. 9.기준)                  | 직책<br>(직책명)                                                          | 성명<br>(익명처리)      | 주요경력<br>(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 임기<br>(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                  |                 |
|                                    | 이사장                                                                  | 구○○               | 거창군청(거창군수)                 |                    | 당연직                          |                  |                 |
|                                    | 상임이사                                                                 | 김○○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 "                            |                  |                 |
|                                    | 비상임이사                                                                | 윤○○               |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 "                            |                  |                 |
|                                    |                                                                      | 최○○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 "                            |                  |                 |
|                                    |                                                                      | 조○○               |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 "                            |                  |                 |
|                                    |                                                                      | 임○○               | 거창석산협회장                    |                    | "                            |                  |                 |
|                                    |                                                                      | 임○○               |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 "                            |                  |                 |
|                                    |                                                                      | 주○○               |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                    | ‘16. 3. 21 ~ ‘19. 3. 20      |                  |                 |
|                                    |                                                                      | 김○○               |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                    | ‘16. 3. 21 ~ ‘19. 3. 20      |                  |                 |
|                                    |                                                                      | 임○○               |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                    | ‘16. 3. 21 ~ ‘19. 3. 20      |                  |                 |
|                                    | 감사                                                                   | 전○○               | 거창군청(산림과장)                 |                    | 당연직                          |                  |                 |
|                                    |                                                                      | 변○○               |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                    | ‘16. 3. 21 ~ ‘19. 3. 20      |                  |                 |
|                                    | 고문                                                                   | 강○○               | 모동기업사 대표                   |                    | -                            |                  |                 |
| 주요기능                               |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                    |                              |                  |                 |
| 자본금 <sup>1)</sup><br>(단위:백만원)      |                                                                      | 178<br>(직전연도말 기준) |                            | 출자·출연액<br>(단위:백만원) |                              | 200              |                 |
| 최근3년간<br>예산 현황<br>(단위:백만원)         | 연도                                                                   | 2016              | 2017                       | 2018               | 재무현황<br>(백만원)<br>'17.12.31기준 | 자산               | 183<br>(자산 총액)  |
|                                    | 예산액 <sup>2)</sup>                                                    | 507               | 488                        | 487                |                              | 부채               | 5<br>(부채 총액)    |
|                                    | 지자체<br>지원액 <sup>3)</sup>                                             | 200               | 200                        | 180                |                              | 자본 <sup>1)</sup> | 178<br>(자본금 총액) |
| 경영성과<br>(단위:백만원)<br>'17. 12. 31.기준 | 총수익                                                                  |                   |                            | 총비용                |                              | 당기순이익            |                 |
|                                    | 543                                                                  |                   |                            | 396                |                              | 147              |                 |

|                                 |                                                                                                            |                   |                            |                  |                              |                         |
|---------------------------------|------------------------------------------------------------------------------------------------------------|-------------------|----------------------------|------------------|------------------------------|-------------------------|
| 설립근거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br>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br>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br>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                            |                  | 전화번호 : 055-943-3924          |                         |
|                                 |                                                                                                            |                   |                            |                  | 홈페이지 : granite.re.kr         |                         |
| 주요연혁                            | 법인설립허가 : '07. 1. 31                                                                                        |                   |                            | 기관형태<br>(출자, 출연) | 출연기관                         |                         |
| 인원현황<br>(‘16.10.<br>현원기준)       | 계                                                                                                          |                   | 정규직                        |                  |                              | 비정규직                    |
|                                 | 5명                                                                                                         |                   | 0명                         |                  |                              | 5명                      |
| 임원<br>(‘17.9.기준)                | 직책<br>(직책명)                                                                                                | 성명<br>(익명처리)      | 주요경력<br>(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                              | 임기<br>(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
|                                 | 이사장                                                                                                        | 양○○               | 거창군청(거창군수)                 |                  |                              | 당연직                     |
|                                 | 상임이사                                                                                                       | 김○○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                              | 〃                       |
|                                 | 비상임이사                                                                                                      | 이○○               |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                              | 〃                       |
|                                 |                                                                                                            | 신○○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                              | 〃                       |
|                                 |                                                                                                            | 최○○               |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                              | 〃                       |
|                                 |                                                                                                            | 임○○               | 거창석산협회장                    |                  |                              | 〃                       |
|                                 |                                                                                                            | 임○○               |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                              | 〃                       |
|                                 |                                                                                                            | 주○○               |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                  |                              | ‘16. 3. 21 ~ ‘19. 3. 20 |
|                                 |                                                                                                            | 김○○               |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                  |                              | ‘16. 3. 21 ~ ‘19. 3. 20 |
|                                 |                                                                                                            | 임○○               |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                  |                              | ‘16. 3. 21 ~ ‘19. 3. 20 |
|                                 | 감사                                                                                                         | 이○○               | 거창군청(산림과장)                 |                  |                              | 당연직                     |
|                                 |                                                                                                            | 이○○               |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                  |                              | ‘16. 3. 21 ~ ‘19. 3. 20 |
|                                 | 고문                                                                                                         | 강○○               | 모동기업사 대표                   |                  |                              | -                       |
| 주요기능                            |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                  |                              |                         |
| 자본금 <sup>1)</sup><br>(단위:백만원)   |                                                                                                            | 143<br>(직전연도말 기준) |                            |                  | 출자·출연액<br>(단위:백만원)           | 200                     |
| 최근3년간<br>예산 현황<br>(단위:백만원)      | 연도                                                                                                         | 2015              | 2016                       | 2017             | 재무현황<br>(백만원)<br>‘16.12.31기준 | 자산<br>164<br>(자산 총액)    |
|                                 | 예산액                                                                                                        | 400               | 507                        | 488              |                              | 부채<br>18<br>(부채 총액)     |
|                                 | 지자체<br>지원액                                                                                                 | 200               | 200                        | 200              |                              | 자본<br>146<br>(자본금 총액)   |
| 경영성과<br>(단위:백만원)<br>‘16.12.31기준 | 총수익                                                                                                        |                   |                            | 총비용              |                              | 당기순이익                   |
|                                 | 507                                                                                                        |                   |                            | 370              |                              | 137                     |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2. 제anyi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br>예산액 | 2019년<br>요구액* | 재 원 별 |     |     |     |     |
|-------|--------------|---------------|-------|-----|-----|-----|-----|
|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기 타 |
| 2019년 | 180          | 180           | 180   | -   | -   | 180 | -   |

- 사업내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 4.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 5.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관계 법령 : 붙임

##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3년부터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18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 계획하고 있음('7년 이사회에서 센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천만원 줄여 지원토록 검토함)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와 연구 및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붙임] 출자·출연 기관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                                    |                                                                                                            |                   |                            |                    |                              |                  |
|------------------------------------|------------------------------------------------------------------------------------------------------------|-------------------|----------------------------|--------------------|------------------------------|------------------|
| 설립근거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br>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br>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br>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                            |                    | 전화번호 : 055-943-3921          |                  |
|                                    |                                                                                                            |                   |                            |                    | 홈페이지 : granite.re.kr         |                  |
| 주요연혁                               | 법인설립허가 : '07. 1. 31                                                                                        |                   |                            | 기관형태<br>(출자, 출연)   | 출연기관                         |                  |
| 인원현황<br>(‘18. 9.<br>현원기준)          | 계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                                    | 5명                                                                                                         |                   | 0명                         |                    | 5명                           |                  |
| 임원<br>(‘18. 9.기준)                  | 직책<br>(직책명)                                                                                                | 성명<br>(익명처리)      | 주요경력<br>(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 임기<br>(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                  |
|                                    | 이사장                                                                                                        | 구○○               | 거창군청(거창군수)                 |                    | 당연직                          |                  |
|                                    | 상임이사                                                                                                       | 김○○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 "                            |                  |
|                                    | 비상임이사                                                                                                      | 윤○○               |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 "                            |                  |
|                                    |                                                                                                            | 최○○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 "                            |                  |
|                                    |                                                                                                            | 조○○               |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 "                            |                  |
|                                    |                                                                                                            | 임○○               | 거창석산협회장                    |                    | "                            |                  |
|                                    |                                                                                                            | 임○○               |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 "                            |                  |
|                                    |                                                                                                            | 주○○               |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                    | '16. 3. 21 ~ '19. 3. 20      |                  |
|                                    |                                                                                                            | 김○○               |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                    | '16. 3. 21 ~ '19. 3. 20      |                  |
|                                    |                                                                                                            | 임○○               |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                    | '16. 3. 21 ~ '19. 3. 20      |                  |
|                                    | 감사                                                                                                         | 전○○               | 거창군청(산림과장)                 |                    | 당연직                          |                  |
|                                    |                                                                                                            | 변○○               |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                    | '16. 3. 21 ~ '19. 3. 20      |                  |
|                                    | 고문                                                                                                         | 강○○               | 모동기업사 대표                   |                    | -                            |                  |
| 주요기능                               |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                    |                              |                  |
| 자본금 <sup>1)</sup><br>(단위:백만원)      |                                                                                                            | 178<br>(직전연도말 기준) |                            | 출자·출연액<br>(단위:백만원) |                              |                  |
| 최근3년간<br>예산 현황<br>(단위:백만원)         | 연도                                                                                                         | 2016              | 2017                       | 2018               | 재무현황<br>(백만원)<br>'17.12.31기준 | 자산               |
|                                    | 예산액 <sup>2)</sup>                                                                                          | 507               | 488                        | 487                |                              | 부채               |
|                                    | 지자체<br>지원액 <sup>3)</sup>                                                                                   | 200               | 200                        | 180                |                              | 자본 <sup>1)</sup> |
| 경영성과<br>(단위:백만원)<br>'17. 12. 31.기준 | 총수익                                                                                                        |                   |                            | 총비용                |                              | 당기순이익            |
|                                    | 543                                                                                                        |                   |                            | 396                |                              | 147              |

## [붙임] 관계 법령

###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 4조 (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